

[천호A1-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구성 안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76호(24.11.28.)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A1-1구역(천호동 467-61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LH)를 지정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안내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주요 역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사업전반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 제시

2. 구성 인원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 포함)

3. 구성 방법

가. 구성 동의서에 연번부여 및 검인 신청 ※「도시정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나. 검인된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충족 ※「도시정비법」 제47조

다. 구성 승인 신청 제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7호

4. 연번 부여 및 검인 신청

가. 신청기간: 2024.12.12.(목) ~ 주민대표구성승인일까지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강동구청 5층 재건축재개발과 방문(성내로 25)

다. 제출서류

1) 신청 문서(별도 양식 없음, 신청일·신청자·필요매수(연번) 기재)

2) 토지등소유자 명부

3)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붙임1>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주소 및 성명 기재 후 선임 증명 서류 첨부

4)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붙임2> 참고하여 여건에 따라 법규 내 수정 가능, 승인 시 최종안 제출

5. 구성 승인 신청

가. 신청기간: 검인된 신청 교부 ~ 구역 내 선착순 구성 승인 신청일까지

나. 제출방법: 강동구청 5층 재건축재개발과 방문(성내로 25)

다. 제출서류

- 1)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붙임3>
- 2) 토지등소유자 명부
- 3) 과반수 이상 검인된 구성 동의서<붙임1> 및 대표선임동의서(공유소유인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주소 및 성명 기재 후 선임 증명 서류 첨부
- 4)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붙임2> 참고하여 여건에 따라 법규 내 수정 가능, 승인 시 최종안 제출

6. 검토 사항

가. 과반수 이상 충족된 검인된 동의서 제출순으로 검토 후 처리

나. 동의서 기재 미충족 등 서류 미비 발견 시 차 순위 제출자 검토 후 처리

다. 서류 미비 접수자는 미비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하여야 함

7. 문의사항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주거사업기획팀 (담당 허진경, ☎ 02-3425-8833)

- 붙임
1.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대표선임동의서 포함) 1부.
 2.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안) 참고용 1부.
 3.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1부.